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	
배포 일시	2022. 11. 29.(화)	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진홍 (044-201-4016)
		담당자	사무관	정일웅 (044-201-4018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위한 운송거부자 현장조사 실시

-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 대상 현장조사팀 파견 -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원희룡)는 11.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**운송사업자**(이하 '운송업체') 및 **운수종사자**(이하 '화물차주')에 대한 **업무개시명령 발동**이 **심의·의결**됨에 따라,

○ 29일 오후부터 **국토부, 지자체, 경찰** 등으로 구성된 **76개 조사팀**을 구성하여 전국 약 **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**에 대한 **현장조사**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.

* 현장조사 실시 권한 :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제1항(보고와 검사)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3조제7항, 제24조제6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□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**명단, 주소** 등을 파악하고, 화물차주의 **실제 운송 여부, 운송거부 현황**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,

○ **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**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**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**를 전달하는 한편,

○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을 경우 해당 **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**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**화물차**가 확인되는 경우 **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**를 실시하여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 · 주소를 확인한 후 **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**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, **철저한 현장조사**를 통해 **업무개시명령이 신속히 집행**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히며,

○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**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주**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수반됨을 인지하시어, 물류 정상화 및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**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요청**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제재 조항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)**

• **제14조(업무개시 명령)**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.

• **제19조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· 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9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• **제23조(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 · 제2호 · 제5호 · 제6호 · 제7호 · 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3.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

• **제66조의2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4조제4항(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자